

의안번호	2217079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6. 5. 13.
추계번호	26B099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2(합동 안전점검)	제1항 ¹⁾ 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2(합동 안전점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상세 사유

-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2025년 12월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178호, 2026. 6. 3. 시행 예정)²⁾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음

[표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현황: 2025년

위치	참여 중앙행정기관	점검대상 업체
'25. 3. 7. ~ 7. 31.	국토교통부	쿠팡CLS 등 11개 영업점
'25. 8. 6. ~ 8. 14.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등 8개 영업점
'25. 8. 22. ~ 11. 18.	국토교통부	롯데택배 등 8개 영업점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의 내용 및 규모, 관련 사업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